

의안번호	제 946 호
의결	년 월 일
연월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946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중징계의결 요구 등 의원면직의 제한(안 제2조)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기소중, 인사위원회 중징계의결 요구 중,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관련 내사 중일 때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 규정(안 제3조~제4조)
 - 의원면직 신청 시 제2조에 따른 제한사항 여부 확인
-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 신속처리 규정(안 제5조)
 - 인사위원회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3. 규칙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규칙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충청북도의회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충청북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